

6.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1982. 12. 28 제정
1988. 3. 11 개정
1998. 11. 11 개정
1999. 12. 30 개정
2002. 9. 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및 35조의 관련사업을 회원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 12. 30, 2002. 9. 5 개정)

제2조(사업의 범위) 본회에서 운영하는 회원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 12. 30 개정)

1. 각 회원의 업무발전과 교양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관련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2. 세미나 및 공청회등 학술행사 개최(2002. 9. 5 개정)
3. 공제등록물건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 또는 재정지원(2002. 9. 5 신설)
4.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용역사업(2002. 9. 5 신설)
5. 지방재정자료의 수집·관리, 발간·대여(2002. 9. 5 신설)
6. 공유재산관리지원 사업(2002. 9. 5 신설)
7. 기타 회원을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02. 9. 5 신설)

제3조(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제2조에 규정된 회원지원사업은 매년도 사업대상 및 소요예산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1999. 12. 30 삭제)

제5조(운영규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회원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2. 12. 28 규정 제83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1 규정 제111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11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30 규정 제118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5 규정 제131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행물편집위원회규칙

간행물편집위원회규칙

1989. 11. 15 제정 1992. 5. 25 개정
1994. 1. 27 개정 1998. 3. 31 개정
1998. 12. 30 개정 2001. 3. 7 개정
2001. 7. 10 개정 2003. 3. 1 개정
2008. 7. 1 개정 2012. 1. 31 개정
2012. 4. 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지 및 기타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간행물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 5. 25, 2001. 3. 7, 2008. 7. 1, 2012. 1. 31 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992. 5. 25, 2001. 3. 7 개정)

1. 편집전반에 관한 방침 및 계획수립
2. 특집안 심의 및 집필자 선정
3. 기타 편집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지방재정지 편집위원회, 기타 간행물 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2001. 3. 7, 2008. 7. 1, 2012. 1. 31 개정)

②지방재정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01. 3. 7, 2008. 7. 1, 2012. 1. 31 개정)

1. 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 되고 발행인을 겸한다.
2. 부위원장은 본회 공제사업 담당이사가 되고 편집인을 겸한다(2008. 7. 1, 2012. 4. 10 개정)
3. 편집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계국의 지방재정분야 각 과장과 지방재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12인의 범위 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1998. 4. 1, 1998. 12. 30, 2001. 3. 7, 2001. 7. 10, 2008. 7. 1, 2012. 1. 31, 2012. 4. 10 개정)

③ <삭제> (2008. 7. 1 개정)

④ 지방재정지 이외의 간행물에 대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992. 5. 25, 2008. 7. 1, 2012. 1. 31 개정)

1. 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 되고 발행인을 겸한다.
2. 부위원장은 본회 이사가 되고 편집인을 겸한다.(1992. 5. 25 개정)
3.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각 부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1. 3. 7, 2008. 7. 1 개정)

제5조(업무관장) ①위원장(발행인)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편집인)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편집내용 및 원고를 감수한다.

제6조(회의)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특집의 주제 및 집필자를 선정후 주제별 집필방향 등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집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001. 3. 7 신설)

제7조(의결) ①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서면회의의 의결방법은 전항에 준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수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집필자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에게 매년도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1.

3. 7 개정)

제9조(자문편집위원)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지의 전반적인 편집 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인의 범위내에서 지방세·재정분야 전문가를 자문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03. 3. 1, 2012. 1. 31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편집위원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1. 3. 7 신설, 2003. 3. 1 개정).

부 칙(1989. 11. 15 규칙 제26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25 규칙 제40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27 규칙 제6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31 규칙 제111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30 규칙 제9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7 규칙 제97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편집위원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편집위원은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제4조단서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1. 7. 10 규칙 제99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 규칙 제107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규칙 제158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31 규칙 제198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0 규칙 제200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계간지 광고 게재규칙

계간지광고게재규칙

1990. 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회가 발간하는 계간지(지방세지, 이하 계간지라 한다) 광고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①광고내용은 간부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공공질서 및 사회도덕규범에 반하거나 계간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제3조(지면배당) 각 월간지의 표지 제2, 3, 4면에 한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신청) ①본회 월간지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업자는 <제1호 서식>의 광고신청서 및 광고안을 본회에 제출하되, 심사결과 게재불가판정된 광고안을 반송한다.

②광고료는 당해광고 게재 계간지가 발간된 후 결제한다.

③광고주나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지면을 일정기간 독점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시 게재조건, 기간, 결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계약으로 한다.

제5조(광고료) ①광고료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광고료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세지
표지 2면	흑 백	200~300
	원 색	400~500
표지 3면	흑 백	150~200
	원 색	300~400
표지 4면	흑 백	300~500
	원 색	500~700

②연재광고에 대하여는 2회부터 위 규정요금의 10%를 할인하고, 단회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의뢰자의 예산부족 등의 사정으로 규정광고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부 칙(1990. 1. 15 규칙 제29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관리담당자 교육비지원규칙

공유재산관리담당자 교육비지원규칙

2012. 3. 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6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담당자”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2. “교육비”라 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행정안전부령 등에 의한 위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재산관리담당자 교육훈련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회원의 재산관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교육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2. 3. 6 규칙 제199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규칙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규칙

2012. 5.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회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시·군·구)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이 발생한 행정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마다, 전년도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 납부액의 30%를 지원하되, 회원별 지원한도액은 연간 총 1억원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2. 5. 30 규칙 제202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